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47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정혜경 · 손 술 · 전종덕
윤종오 · 서왕진 · 한창민
용혜인 · 정춘생 · 차규근
황운하 · 김준형 · 이해민
김재원 의원(13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회의의원 및 자치구·시·군회의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비례대 수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하고자 함 (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을 일정 득표율 이상 정당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든 정당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제1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10으로”를 “30으로”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10으로”를 “30으로”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를 “각 정당에”로, “단수가”를 “소수점 이하 수가”로, “의석할당정당에”를 “정당에”로,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을 “그 수가 같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을 “소수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석할당정당간의”를 “정당간의”로,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을 “정당에 배분한”으로, “단수가”를 “소수점 이하 수가”로,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을 “정당에 1석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생 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 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 定數의 100分の <u>10으로</u>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 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 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 으로 한다.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30으로-----. -----. ----- ----- -----.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 · ② (생 략)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u>10으로</u>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30으로-----. -----.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 의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u>유효투표총수의</u> <u>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u>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 의 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 ----- <u>각 정당에</u> ----- -----

소수점 이하 수가
정당에
그 수가 같은 때에는
소
수점

②

정당간의

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
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
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
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
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
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
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
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
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
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
석씩 배분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

-----정당에
배분한-----

-----소수점 이
하 수가-----정당에
1석씩-----.

<단서 삭제>

③ -----

는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
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
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
도로 빼야 한다.

④ (생략)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